

## 2026년 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 사업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6년도 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11일
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
<전문기관>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

### ① 사업 목적

-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·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

### ② 사업개요

- (지원규모) 실습생 207명 (국내 191명, 글로벌 16명)
  - \* 지원규모는 '26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기간) 국내 4개월(上 3~6월, 下 9~12월), 글로벌 6개월(上 3~8월, 下 7~12월)
  - \* 국내과정 연수업체 평가(기술 수준과 성장 단계를 고려)를 통해 선정된 시분야 원천기술 보유기업에 한해 2개월 추가 연장 지원(기존 4개월 + 추가 2개월)
- (지원대상) 정보통신융합법(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)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/대학/학생
  - (연수업체)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,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, 기관, 단체

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
- ③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
-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- ⑤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-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
-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, 기업 또는 단체

- \* 글로벌과정 참여 연수업체는 해외 소재하며,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관련된 기업, 기관 참여 가능

- **(학생)** 참여대학의 **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**,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,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

- \* 국내과정 :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% 이상 이수자
- \* 글로벌과정 :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% 이상 이수자,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 함.
- \* 학사 관리 조건: 국내 및 글로벌 과정에 당해 참여하는 4~6개월 과정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어야 함

- **(참여대학)**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으로,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

① 전산·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·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·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

\* 과기특성화대학(KAIST, GIST, DGIST, UNIST 등) 포함

○ **(지원내용)**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\*

구분	지원대상	지원 항목
국내	연수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인턴십 운영 지원금(정부지원)</b> : 월 120만원 × 실습생 수</li> <li>- 전담인력 확보, 실습생 수당 지원,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,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<b>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</b></li> <li>- 상기 지원금은 <b>매월 지급</b>되며, 연수업체의 <b>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</b>(계좌 이체 내역 등) <b>이후 지급</b>을 원칙으로 함</li> </ul>
	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실습생 수당(기업부담)</b> : 최저임금액('26년 기준 2,156,880원/월) 이상</li> <li>- 실습생 수당은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<b>최저임금액 이상</b>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</li> </ul>
글로벌	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실습생 수당(기업부담)</b> : 월 US \$ 2,000 이상</li> <li>■ <b>체재 준비금(정부지원)</b> : 왕복 항공료*, 비자발급 수수료, 의료보험 등</li> <li>* 편도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</li> <li>■ <b>실습생 체재 지원금(정부지원)</b> : 최대 월 150만원**</li> <li>** 실습생 수당 US \$ 2,400 이상부터 US \$ 300 단위로 지원금 10%씩 감액, 월 US \$ 3,800 이상 시 75만원 지급</li> </ul>

\*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

○ **(학생 선발절차)** 국내과정(上 3~6월, 下 9~12월) 기준으로 상반기는 2026년 1월에 신청, 2월에 선정하고, 하반기 모집은 2026년 6월까지 신청받고, 7월에 선정(예정)

	① 희망기업 지원	②서류 전형	③면접전형
선발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제출</li> <li>●직무, 프로젝트 내용, 실습 조건,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선발기준은 기업별 상이</li> <li>●기업별로 진행되며,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</li> <li>* 기업별 코딩테스트 별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(국내) 대면 면접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면접 실시</li> <li>●(글로벌) 온라인 화상 면접, 영어 면접 실시</li> </ul>
선발 일정	(국내) 상반기 1월 ~ 2월 / 하반기 7월 (글로벌) 상반기 1월 ~ 2월 / 하반기 5월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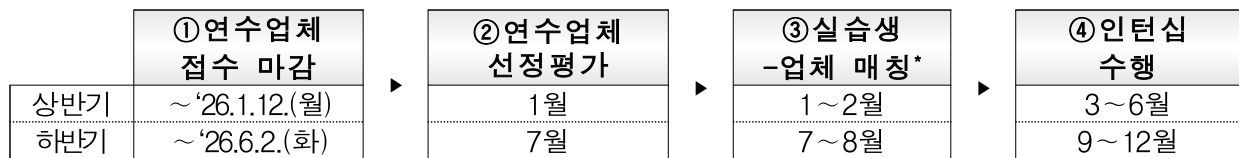
○ (추진체계)



3 연수업체 지원 및 선정

1 국내과정

○ (지원절차)



\* 연수업체-인턴 간 매칭은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○ (연수업체 선정) 인턴십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(지원규모의 1.5배 수준)

평가항목	평가기준	설명
수행역량 (40%)	▶ 기업 건전성, 실습 환경	기업 신용도, 근무 환경 등
	▶ 기업의 기술력 현황, 향후 비전 등	특히, 수주실적,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
	▶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	지도인력 기술경력, 전문성, 지도경험 등
운영계획 (50%)	▶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/ 구체성	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
	▶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	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
	▶ 지도계획의 우수성	실습생 지도 및 관리방법
	▶ 실습생 평가 계획	평가방법 및 절차 등
후속계획 (10%)	▶ 결과물 사업화 및 기대효과	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성과
	▶ 참여 실습생 고용연계 계획	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

※ 최근 3년(접수 마감일 기준)내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실습생이 재직 시 기점 부여(1명 3점, 2명 이상 6점)

※ 국내과정 연수업체 평가(기술 수준과 성장 단계를 고려)를 통해 선정된 시분야 원천기술 보유기업에 한해 2개월 추가 연장 지원(기존 4개월 + 추가 2개월)

※ 연수업체는 실습생을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, 상황에 따라 연수업체-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

## ② 글로벌과정

### ○ (지원절차)

	①연수업체 접수 마감	▶	②연수업체 적격성 검토*	▶	③실습생- 업체 매칭**	▶	④비자 발급	▶	⑤인턴십 수행
상반기	수시접수		1월		1~2월		2~3월		3~8월
하반기		4월		4~5월		5~6월		7~12월	

\*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연수업체 적격성 검토 후 승인 통보('26.상반기 연수업체-학생 매칭을 위해 '26.1.12.까지 마감, 이후 수시 접수된 업체는 '26.하반기 지원)

\*\* 연수업체-인턴 간 매칭은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# ○ (적격성 검토) 실습생 직무 적정성, 기업 건전성, 실습 계획·환경 등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학생 매칭 지원

※ 연수업체는 비자발급 기준에 충족 인원에 맞춰 최대 3명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연수업체-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

## ④ 참여대학 지원 및 승인

### ○ (지원절차)

	①참여대학 접수	▶	②참여대학 적격성 검토	▶	③협약체결	▶	④인턴십 수행
상반기	~'26.1.12.(월)		1월		1월말		3~6월
하반기(글로벌)	~'26.4.8.(수)		4월		4월말		7~12월
하반기(국내)	~'26.6.2.(화)		6월		6월말		9~12월

### ○ (참여대학 접수 및 관리) 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 참여가 승인된 대학은 3년간 국내 및 글로벌 과정 구분 없이 모두 참여 가능

\* 참여대학은 적격성 검토 승인 이후 당해연도 상·하반기 국내 및 글로벌과정 인턴십 참여 가능

### ○ (참여대학 적격성 검토)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 검토 후 승인

검토 항목	검토 기준
정보통신 관련학과 참여현황	▶ 본 사업 참여학과 현황 파악 등
학점 부여 계획	▶ 학점 부여 계획 확인
참여학생 관리 계획	▶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▶ 참여학생 애로사항 관리 및 해결방안 등
참여학생 모집 및 선별 계획	▶ 참여학생 모집대상, 일정,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▶ 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

## 5 참여자 의무사항

- (연수업체) 업무환경 선 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, ICT관련 직무 부여 등
    - (ICT관련 직무 부여)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
-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·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
  -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
- (업무환경 구축)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,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선 구축해야 하며,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
  - (학생보호) 국내 연수업체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」 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  - (교육시간 배정) 연수업체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(사전 교육,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등) 비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함
  - (실습생 수당 지급) 국내 연수업체는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생 수당을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, 해외 연수업체(미국)는 월 US \$2,000 이상 지급해야 함
- \* 국내과정 연수업체의 경우 실습생 수당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이며, 미가입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불가
- (서류협조) 실습생의 인턴십 수행(운영비 지급 및 비자 발급 등) 및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및 참여대학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
- (참여대학) 학칙 등을 근거로 인턴십 수행에 대한 학점 인정이 가능해야 함
- (학생) 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,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
- (비자획득) 글로벌 인턴십 수행을 위한 해당 국가 인턴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,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
- (참여포기) 연수업체-학생 최종 매칭 이후 개인 사정으로 참여 포기 시 제재\* 가능
- \* (글로벌 인턴십) 정부지원금(①체재 준비금 : 비자발급비, 항공료, 의료보험, ②실습생 지원금)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,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연수 국가에서 출국해야 함

## 6 지원 제외 등 유의사항

-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개인 및 법인
- 타 국적자 및 외국 소재 대학(교) 학생
- 글로벌 과정의 경우, 인턴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대학(교) 학생
-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인턴 및 일경험 사업에 참가 중인 학생

- 연수업체-학생 매칭 확정 이후 인턴십이 중단되는 해당 기업 및 학생의 동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
-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

## 7 관련법령 및 규정

-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~제14조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

## 8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

- ☞ 공식 홈페이지(<http://www.ictintern.or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☞ 관련양식은 공식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
구분	제출서류
참여대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(<a href="http://www.ictintern.or.kr">http://www.ictintern.or.kr</a>)</li> <li>① 신청공문 ② 운영계획서(서식③) ③ 대학 고유번호증</li> <li>④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</li> <li>○ 접수마감</li> <li>(상반기) ~ 2026.1.12.(월) 17:00 마감</li> <li>(하반기 글로벌) ~ 2026.4.8.(수) 17:00 마감</li> <li>(하반기 국 내) ~ 2026.6.2.(화) 17:00 마감</li> </ul>
연수업체 (국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(<a href="http://www.ictintern.or.kr">http://www.ictintern.or.kr</a>)</li> <li>① 신청공문 ② 운영계획서(서식①) ③ 사업자등록증</li> <li>④ 최근 2개년 재무제표 (상반기: '22년, '23년 재무제표 / 하반기: '23년, '24년 재무제표 제출)</li> <li>⑤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1종 (예) 원천징수 명세, 4대보험 산출내역, 고용보험 산출내역 등</li> <li>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(서식②)</li> <li>○ 접수마감</li> <li>(상반기) ~ 2026.1.12.(월) 17:00 마감</li> <li>(하반기) ~ 2026.6.2.(화) 17:00 마감</li> </ul>
연수업체 (글로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(<a href="http://global.ictintern.or.kr">http://global.ictintern.or.kr</a>)</li> <li>① 신청서(운영계획서 포함) 1부</li> <li>○ 접수마감 : 수시 접수</li> <li>* '26년 상반기 연수업체-학생 매칭을 위해 '26.1.12.(월)까지 마감, 이후 수시 접수된 연수업체는 '26년 하반기 지원)</li> </ul>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9 문의처

구분(문의처)	기관명	전화번호	E-mail
사업운영기관 (교육신청, 접수)	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	02-2046-1465~9 02-2046-1460	ictintern@fkii.org
사업전담기관 (사업기획)	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선도인재팀	042-612-8429	yslim@iitp.kr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정보통신기획평가원



한국정보산업연합회